

보장성 상품

AIA생명 치매특약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 치매특약 부가가능 주계약상품 2종 ①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②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90세만기에 한함)
- ※ 치매특약 부가가능 주계약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안내장과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특약은 치매를 주된 보장으로 하는 특약상품으로 목돈마련이나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보험 상품과 다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어깨에
큰 짐을 지우고 싶지 않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치매라도 걸리면 어찌지?

우리 엄마 이렇게 고운 모습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100세 시대에 치매가 제일 무섭다던데
내가 어떤 준비를 해놓아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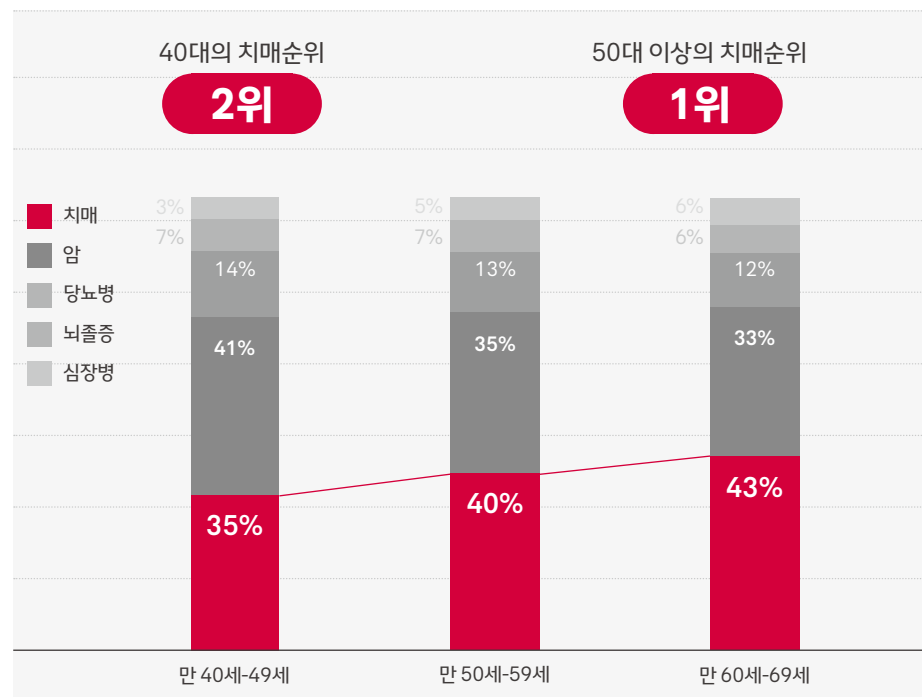


WHY 1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A. 치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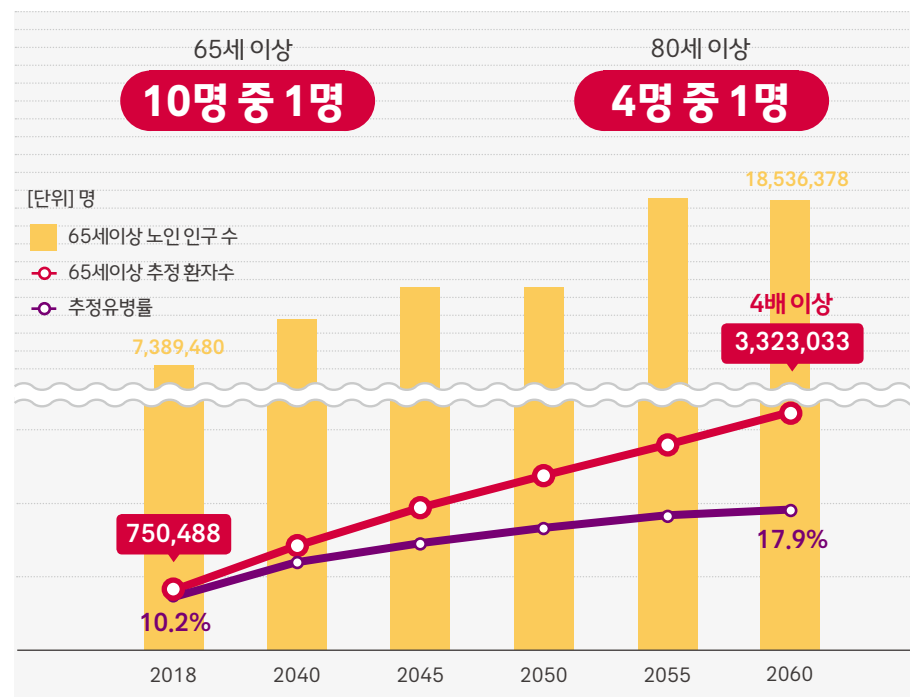
50대 이상은 치매, 암, 뇌혈관질환, 당뇨병, 심장 질환을 가장 두려워하고, 40대에서도 암 다음으로 치매를 심리적 부담이 큰 질병으로 꼽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치매현황>, 중앙치매센터 2016

B. 치매환자 수 증가 추이

2018년 65세 이상 치매환자수는 75만명 이상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10명 중 1명 수준이며, 80세 이상의 경우 4명 중 1명은 치매환자입니다.



[출처] 2018년 : <치매오늘은>, 중앙치매센터 2018 / 2040년 ~ : <연차보고서>, 중앙치매센터 2018
80세 이상 :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자료>, 중앙치매센터 2019

WHY 2

왜 치매가 두려우신가요?

A. 오랜 간병기간

치매는 간병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첫 증상 후 평균 생존기간

알츠하이머(전체 치매의 74.4%) 치매 12.6년

암	VS	치매(알츠하이머)
완치가능 (조기발견 시)	완치 가능여부	완치불가 (퇴행성질환)
大	치료비	小
小	간병기간	大
60% 이상	보험가입률	2% 미만

- [출처]
- 알츠하이머 치매 비중 : <2016년 치매역학조사(65세 이상)>, 중앙치매센터 2018
 - 치매 생존기간 :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추적 조사>, 삼성서울병원 2013
 - 완치 가능여부 : <치매사전>, 중앙치매센터 2019
 - 치료비, 간병기간 :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건강보험공단 2017
(알츠하이머병과 악성신생물 급여비 및 급여기간의 상대적 비교)
 - 보험가입률 :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2017

B. 부담스러운 치매 간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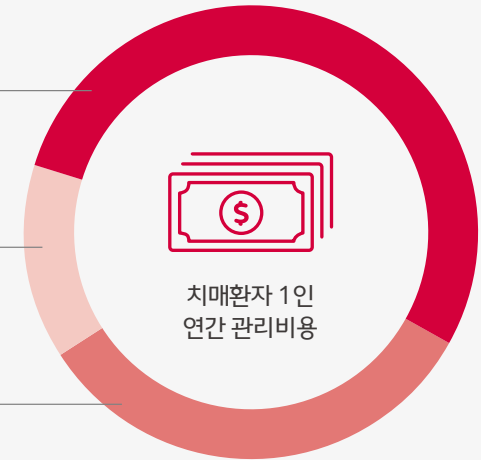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의 약 50%가 장기요양비와 간병비입니다.

치매환자 1인당 2018년 경제적 비용
2,095만원 (월 환산 시 매월 175만원)

의료비/약제비,
53.4%

장기요양비 외,
13.9%

간병비 외,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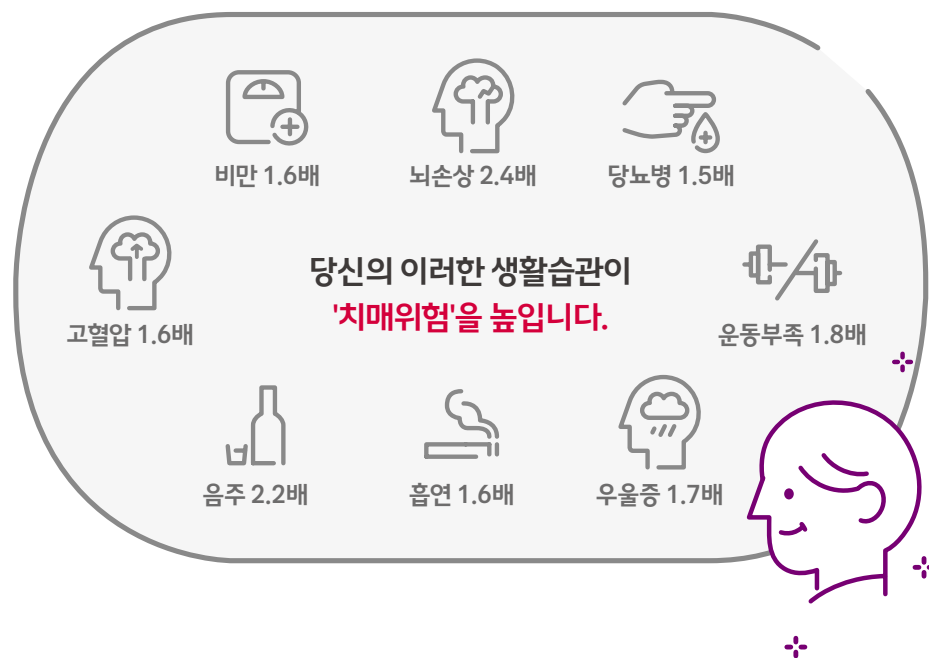
[출처] <국제치매정책동향>, 중앙치매센터 2018

HOW 1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치매위험인자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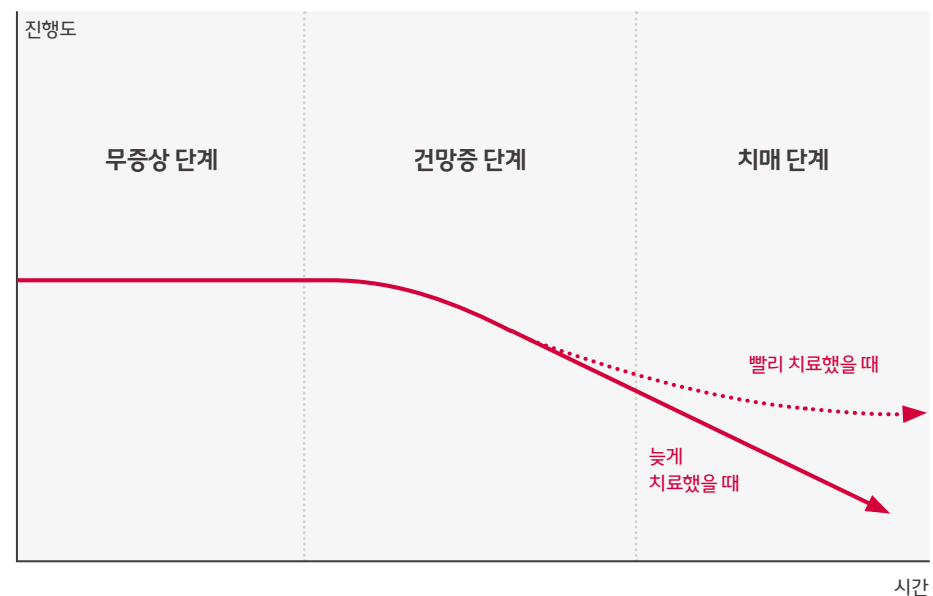
흔한 생활 습관인 음주, 흡연도 치매 위험인자 중 하나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흔한 운동부족과 비만 역시 치매 위험이 1.6~1.8배나 높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중앙치매센터 2018

B. 치매도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기본! 치매 초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는 치매의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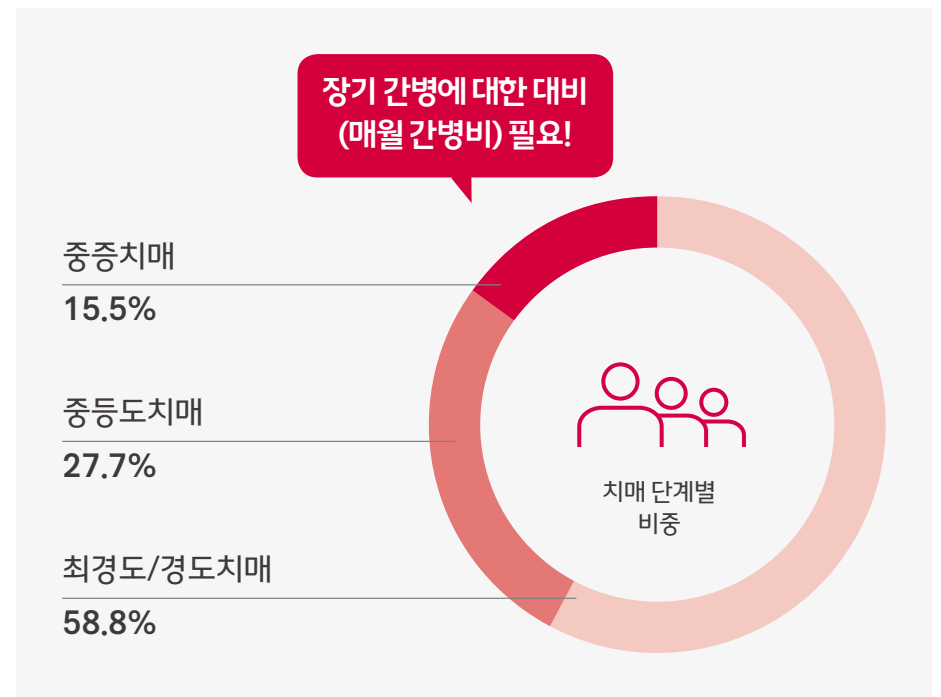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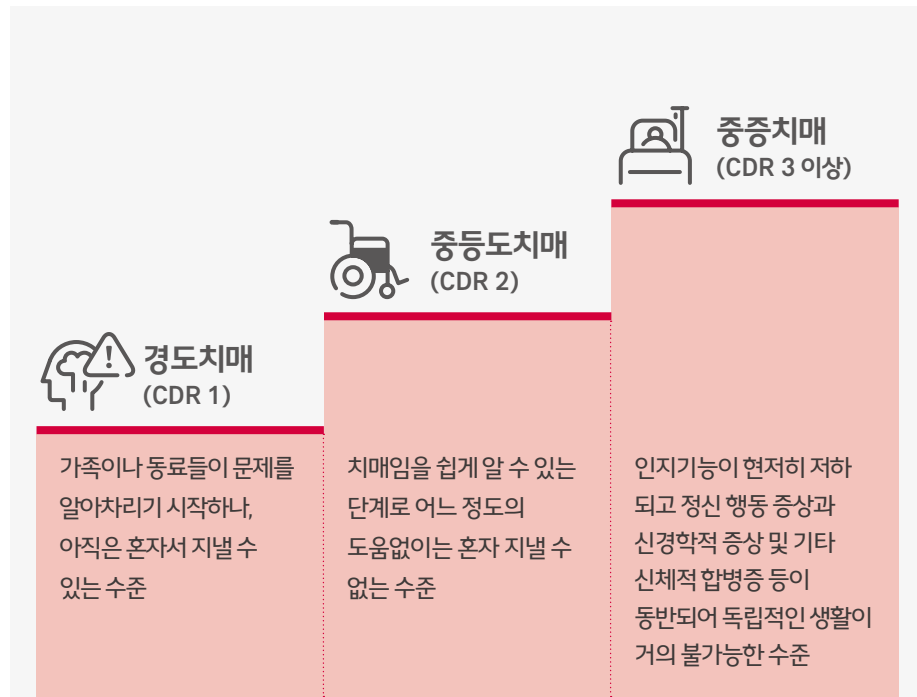
[출처]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중앙치매센터 2018

HOW 2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C. 중증치매는 장기간병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치매환자 중 중증치매 환자 비율은 15.4%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증치매 환자는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여 장기적인 간병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치매오늘은> 중앙치매센터 2018

상품 특징

AIA생명 치매특약 특징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맞춤

고객 니즈에 따른 맞춤 설계가능!

특약 조립 설계를 통한 다양한 니즈 해결 가능

- 치매 단계별 보장 니즈 (경도, 중등도, 중증)
- 중증치매 간병비 니즈 (매월 지급)
- 중증치매 추가 진단비 니즈 (일시금)

원원

주계약 상품과 원원(보장시너지) 가능!

주계약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특약 납입면제 가능

- (무)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부가 시 (사망보장)
: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 시
-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부가 시 (2대 질병 보장)
*2대 질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2형: 2대 질병 보장 / 2대 질병 진단확정 또는 50% 이상 장해 시
*3형: 2대 질병+중증치매 보장 / 2대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확정 시 또는 50% 이상 장해 시



실속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속설계 가능!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보험료는 낮게
2종(표준형) 대비 납입완료시점 상대적으로 높은 해지환급률

-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 부담은 적게
- 납입기간 종료 후 해지환급금은 2종(표준형)과 동일하므로 총 납입보험료 절감으로 2종(표준형) 대비 해지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든든

꼭 필요한 보장 든든설계 가능!

꼭 필요한 중증치매에 대한 집중보장 가능

-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중증치매 진단확정 후 생존 시 매월 최대 200만원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200구좌 가입시)
- 중증치매진단자금: 최대 1억원 (최초 1회 한, (무)안심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안심중증치매진단특약 80구좌 가입시)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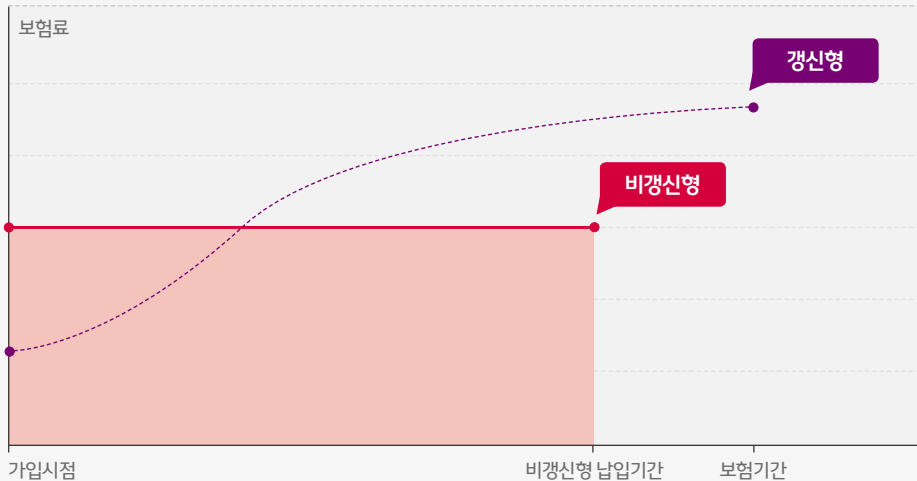
상품 특징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속설계 가능!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선택 시]

-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특약!
- 1종 해지환급금미지급형으로 실속있게 특약을 설계할 수 있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

A. 비갱신형 특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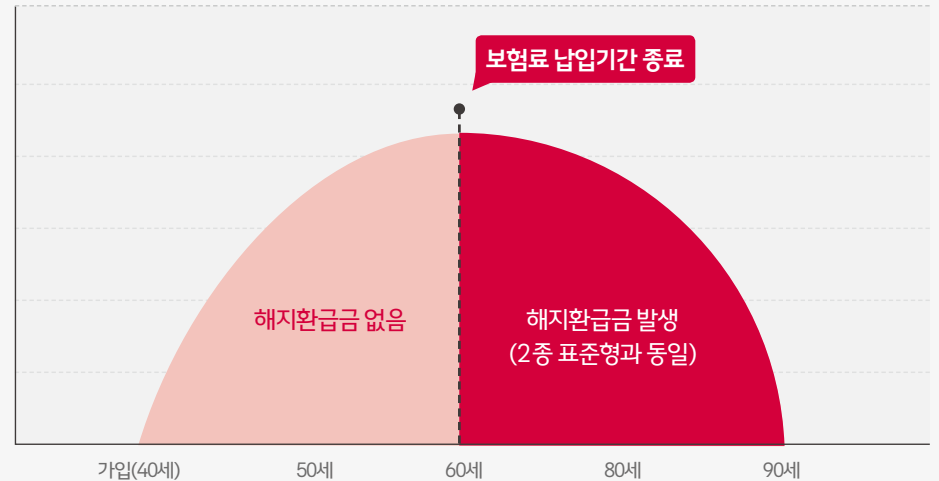
보험료 확정상품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변동 없게



B.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특약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 부담은 적게

예시기준 | 40세 남성,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1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구좌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1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100구좌,
각각 90세 만기 / 20년납 월납 가입기준 (2종 표준형 동일 조건과 비교)



특약 가입예시 1

표준 치매보장 Plan

진단급여금 지급기준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 → 중등도치매상태 → 중증치매상태 순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가입 기준



-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약 가입예시 2

중증치매간병비 특화 Plan

진단급여금 지급기준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 → 중등도치매상태 → 중증치매상태 순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200구좌 가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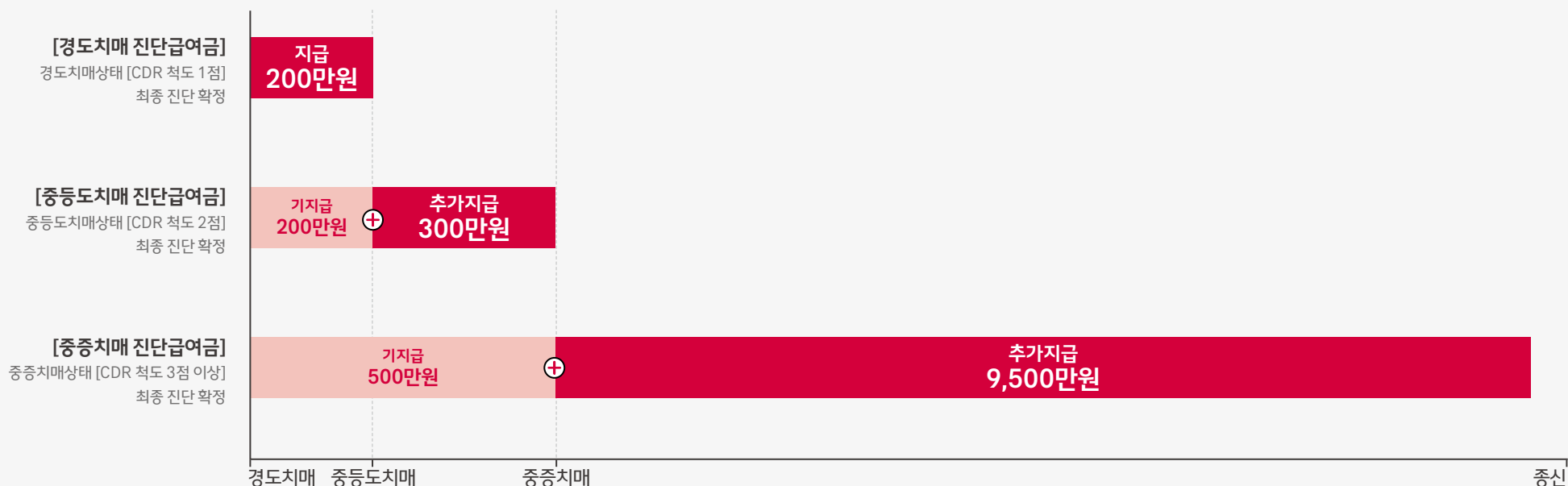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약 가입예시 3

중증치매진단금 특화 Plan

진단급여금 지급기준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 → 중등도치매상태 → 중증치매상태 순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80구좌 가입 기준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 안내

1. 특약을 부가할 수 있는 주계약

(무)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90세만기에 한함)

※ 주계약 보장내용은 별도의 주계약 상품안내장 및 약관을 참고하기 바람

2. 특약 종류

보험종목 명칭	종구분	보험의 세목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종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순수보장형
	2종 : 표준형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종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 : 표준형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진단특약	1종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 : 표준형	

3. 특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85세 만기	10년납	40세 ~ 70세	월납,
	15년납	40세 ~ 70세	2개월납,
	20년납	40세 ~ 65세	3개월납, 6개월납,
90세 만기	10년납	40세 ~ 70세	연납
	15년납	40세 ~ 70세	
	20년납	40세 ~ 70세	

※ 다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기간은 최대 종신으로 합니다.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은 반드시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또는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과 함께 부가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3형(치매추가형)에 부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약보장내용

특약	가입구좌	지급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500만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0만원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생존에 관계없이 보증지급하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이후에는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 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동안 확정지급)	매월 100만원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중증치매 진단급여금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4,000만원

-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가입구좌)에 따라 변동되며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경도 이상의 치매상태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금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에서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 진단급여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도치매 진단급여금 또는 중등도치매 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라 함은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된 날부터 만 3년 이내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36개월분의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은 지급이 보증됩니다.
- 보험수익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또는 보증지급기간 이후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 내에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생존하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수령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잔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을 평균공시이율(해당 특약의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거나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의 최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약 보험료 예시

1.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연령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40세	11,050	14,870	10,890	14,600
50세	14,770	19,870	14,350	19,100
60세	21,250	27,930	19,840	25,500

2.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기준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연령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40세	20,400	26,900	29,400	39,000
50세	26,400	34,900	38,100	50,200
60세	36,600	47,800	51,600	65,600

3.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기준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원]

연령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40세	17,720	23,360	18,440	24,280
50세	23,040	30,600	23,720	31,240
60세	32,120	42,440	32,000	41,280

- 상기 보험료는 특약만의 보험료 예시이며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 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상기 가입연령은 주계약의 납입기간별 가입연령에 따라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계약상품의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및 특약 합산보험료 예시

1. (무)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에 특약 부가 시

기준 | [종신, 20년납, 월납, 일반]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단위: 원]

특약 유형	연령	남자			여자		
		주계약보험료	특약 보험료	합계	주계약보험료	특약 보험료	합계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40세	258,000	49,170	307,170	229,000	58,730	287,730
	50세	334,000	64,210	398,210	290,000	76,170	366,170
2종(표준형)	40세	258,000	65,130	323,130	229,000	77,880	306,880
	50세	334,000	85,370	419,370	290,000	100,540	390,540

2.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II에 특약 부가 시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2형(순수보장형) 주계약 400구좌,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단위: 원]

특약 유형	연령	남자			여자		
		주계약보험료	특약 보험료	합계	주계약보험료	특약 보험료	합계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40세	46,800	49,170	95,970	33,600	58,730	92,330
	50세	55,600	64,210	119,810	40,800	76,170	116,970
	60세	62,000	89,970	151,970	47,200	103,440	150,640
2종(표준형)	40세	46,800	65,130	111,930	33,600	77,880	111,480
	50세	55,600	85,370	140,970	40,800	100,540	141,340
	60세	62,000	118,170	180,170	47,200	132,380	179,580

-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종(표준형)의 유형 구분은 특약에만 적용됩니다.
- 상기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의 주계약보험료는 고액계약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입니다.
- 상기 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약 해지환급금 예시

1.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각40세,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32,600	0	0.0%	178,440	0	0.0%	130,680	0	0.0%	175,200	0	0.0%
3년	397,800	0	0.0%	535,320	246,820	46.1%	392,040	0	0.0%	525,600	240,910	45.8%
5년	663,000	0	0.0%	892,200	551,100	61.7%	653,400	0	0.0%	876,000	538,740	61.5%
10년	1,326,000	0	0.0%	1,784,400	1,299,360	72.8%	1,306,800	0	0.0%	1,752,000	1,266,330	72.2%
15년	1,989,000	0	0.0%	2,676,600	2,107,720	78.7%	1,960,200	0	0.0%	2,628,000	2,038,280	77.5%
20년	2,652,000	3,053,980	115.1%	3,568,800	3,053,980	85.5%	2,613,600	2,915,640	111.5%	3,504,000	2,915,640	83.2%
25년	2,652,000	3,540,830	133.5%	3,568,800	3,540,830	99.2%	2,613,600	3,297,640	126.1%	3,504,000	3,297,640	94.1%
30년	2,652,000	4,106,570	154.8%	3,568,800	4,106,570	115.0%	2,613,600	3,689,650	141.1%	3,504,000	3,689,650	105.2%
40년	2,652,000	5,401,920	203.6%	3,568,800	5,401,920	151.3%	2,613,600	4,116,630	157.5%	3,504,000	4,116,630	117.4%
50년	2,652,000	0	0.0%	3,568,800	0	0.0%	2,613,600	0	0.0%	3,504,000	0	0.0%

2.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기준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각40세,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44,800	0	0.0%	322,800	0	0.0%	352,800	0	0.0%	468,000	0	0.0%
3년	734,400	0	0.0%	968,400	478,700	49.4%	1,058,400	0	0.0%	1,404,000	755,400	53.8%
5년	1,224,000	0	0.0%	1,614,000	1,061,400	65.7%	1,764,000	0	0.0%	2,340,000	1,606,900	68.6%
10년	2,448,000	0	0.0%	3,228,000	2,497,700	77.3%	3,528,000	0	0.0%	4,680,000	3,717,600	79.4%
15년	3,672,000	0	0.0%	4,842,000	4,051,300	83.6%	5,292,000	0	0.0%	7,020,000	5,973,100	85.0%
20년	4,896,000	5,870,200	119.8%	6,456,000	5,870,200	90.9%	7,056,000	8,521,300	120.7%	9,360,000	8,521,300	91.0%
25년	4,896,000	6,768,900	138.2%	6,456,000	6,768,900	104.8%	7,056,000	9,547,500	135.3%	9,360,000	9,547,500	102.0%
30년	4,896,000	7,830,800	159.9%	6,456,000	7,830,800	121.2%	7,056,000	10,566,300	149.7%	9,360,000	10,566,300	112.8%
40년	4,896,000	10,576,000	216.0%	6,456,000	10,576,000	163.8%	7,056,000	11,338,200	160.6%	9,360,000	11,338,200	121.1%
50년	4,896,000	0	0.0%	6,456,000	0	0.0%	7,056,000	0	0.0%	9,360,000	0	0.0%

3.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기준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각40세, 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12,640	0	0.0%	280,320	0	0.0%	221,280	0	0.0%	291,360	0	0.0%
3년	637,920	0	0.0%	840,960	368,720	43.8%	663,840	0	0.0%	874,080	387,120	44.2%
5년	1,063,200	0	0.0%	1,401,600	819,840	58.4%	1,106,400	0	0.0%	1,456,800	855,360	58.7%
10년	2,126,400	0	0.0%	2,803,200	1,931,880	68.9%	2,212,800	0	0.0%	2,913,600	2,005,880	68.8%
15년	3,189,600	0	0.0%	4,204,800	3,137,800	74.6%	3,319,200	0	0.0%	4,370,400	3,235,120	74.0%
20년	4,252,800	4,557,240	107.1%	5,606,400	4,557,240	81.2%	4,425,600	4,642,080	104.8%	5,827,200	4,642,080	79.6%
25년	4,252,800	5,295,680	124.5%	5,606,400	5,295,680	94.4%	4,425,600	5,269,720	119.0%	5,827,200	5,269,720	90.4%
30년	4,252,800	6,199,760	145.7%	5,606,400	6,199,760	110.5%	4,425,600	5,954,560	134.5%	5,827,200	5,954,560	102.1%
40년	4,252,800	8,848,160	208.0%	5,606,400	8,848,160	157.8%	4,425,600	7,028,400	158.8%	5,827,200	7,028,400	120.6%
50년	4,252,800	0	0.0%	5,606,400	0	0.0%	4,425,600	0	0.0%	5,827,200	0	0.0%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특약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될 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2종(표준형)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 동안 특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계약 및 특약 합산 해지환급금 예시

1. (무)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에 특약 부가 시

기준 [[종신, 20년납, 각40세, 월납, 일반]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장기납입보너스 반영

[90세만기, 20년납, 각40세, 월납]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86,040	0	0.0%	3,877,560	0	0.0%	3,452,760	0	0.0%	3,682,560	0	0.0%
3년	11,058,120	4,772,427	43.1%	11,632,680	5,866,667	50.4%	10,358,280	4,172,856	40.2%	11,047,680	5,556,286	50.2%
5년	18,430,200	10,274,780	55.7%	19,387,800	12,707,120	65.5%	17,263,800	9,077,194	52.5%	18,412,800	12,078,194	65.5%
10년	36,860,400	24,563,138	66.6%	38,775,600	30,292,078	78.1%	34,527,600	21,882,526	63.3%	36,825,600	28,872,336	78.4%
15년	55,290,600	39,623,053	71.6%	58,163,400	48,919,873	84.1%	51,791,400	35,550,722	68.6%	55,238,400	46,797,222	84.7%
20년	73,720,800	70,155,946	95.1%	77,551,200	70,155,946	90.4%	69,055,200	67,239,311	97.3%	73,651,200	67,239,311	91.2%
25년	73,720,800	78,856,309	106.9%	77,551,200	78,856,309	101.6%	69,055,200	75,682,389	109.5%	73,651,200	75,682,389	102.7%
30년	73,720,800	88,635,300	120.2%	77,551,200	88,635,300	114.2%	69,055,200	84,919,908	122.9%	73,651,200	84,919,908	115.3%
40년	73,720,800	111,013,068	150.5%	77,551,200	111,013,068	143.1%	69,055,200	103,076,269	149.2%	73,651,200	103,076,269	139.9%
50년	73,720,800	106,176,625	144.0%	77,551,200	106,176,625	136.9%	69,055,200	99,372,629	143.9%	73,651,200	99,372,629	134.9%

* 평균공시이율(2.5%) 가정시

[단위: 원]

경과 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86,040	0	0.0%	3,877,560	0	0.0%	3,452,760	0	0.0%	3,682,560	0	0.0%
3년	11,058,120	4,772,427	43.1%	11,632,680	5,866,667	50.4%	10,358,280	4,172,856	40.2%	11,047,680	5,556,286	50.2%
5년	18,430,200	10,274,780	55.7%	19,387,800	12,707,120	65.5%	17,263,800	9,077,194	52.5%	18,412,800	12,078,194	65.5%
10년	36,860,400	24,563,138	66.6%	38,775,600	30,292,078	78.1%	34,527,600	21,882,526	63.3%	36,825,600	28,872,336	78.4%
15년	55,290,600	39,623,053	71.6%	58,163,400	48,919,873	84.1%	51,791,400	35,550,722	68.6%	55,238,400	46,797,222	84.7%
20년	73,720,800	70,155,946	95.1%	77,551,200	70,155,946	90.4%	69,055,200	67,239,311	97.3%	73,651,200	67,239,311	91.2%
25년	73,720,800	78,856,309	106.9%	77,551,200	78,856,309	101.6%	69,055,200	75,682,389	109.5%	73,651,200	75,682,389	102.7%
30년	73,720,800	88,635,300	120.2%	77,551,200	88,635,300	114.2%	69,055,200	84,919,908	122.9%	73,651,200	84,919,908	115.3%
40년	73,720,800	111,013,068	150.5%	77,551,200	111,013,068	143.1%	69,055,200	103,076,269	149.2%	73,651,200	103,076,269	139.9%
50년	73,720,800	106,176,625	144.0%	77,551,200	106,176,625	136.9%	69,055,200	99,372,629	143.9%	73,651,200	99,372,629	134.9%

* 현재공시이율(2.64%) 가정시

[단위: 원]

경과 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86,040	0	0.0%	3,877,560	0	0.0%	3,452,760	0	0.0%	3,682,560	0	0.0%
3년	11,058,120	4,772,427	43.1%	11,632,680	5,866,667	50.4%	10,358,280	4,172,856	40.2%	11,047,680	5,556,286	50.2%
5년	18,430,200	10,274,780	55.7%	19,387,800	12,707,120	65.5%	17,263,800	9,077,194	52.5%	18,412,800	12,078,194	65.5%
10년	36,860,400	24,563,138	66.6%	38,775,600	30,292,078	78.1%	34,527,600	21,882,526	63.3%	36,825,600	28,872,336	78.4%
15년	55,290,600	39,623,053	71.6%	58,163,400	48,919,873	84.1%	51,791,400	35,550,722	68.6%	55,238,400	46,797,222	84.7%
20년	73,720,800	70,155,946	95.1%	77,551,200	70,155,946	90.4%	69,055,200	67,239,311	97.3%	73,651,200	67,239,311	91.2%
25년	73,720,800	78,856,309	106.9%	77,551,200	78,856,309	101.6%	69,055,200	75,682,389	109.5%	73,651,200	75,682,389	102.7%
30년	73,720,800	88,635,300	120.2%	77,551,200	88,635,300	114.2%	69,055,200	84,919,908	122.9%	73,651,200	84,919,908	115.3%
40년	73,720,800	111,013,068	150.5%	77,551,200	111,013,068	143.1%	69,055,200	103,076,269	149.2%	73,651,200	103,076,269	139.9%
50년	73,720,800	106,176,625	144.0%	77,551,200	106,176,625	136.9%	69,055,200	99,372,629	143.9%	73,651,200	99,372,629	134.9%

- 상기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특약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될 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2종(표준형)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 동안 특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또는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 해지환급금은 예시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예시금액은 최저보증이율 및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현재(2019년) 평균공시이율 2.5%, 현재(2019.05)의 공시이율 2.64%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적용되며,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시이율이 미래의 공시이율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입니다.
-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과 적용적립금 산출이율(연복리 2.75%)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상기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 및 평균공시이율(2.5%), 현재(2019.05)의 공시이율 2.64%가 경과기간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의 비율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2. (무)실속하나로건강보험II에 특약 부가 시

기준 | [90세만기, 20년납, 각40세, 월납]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2형(순수보장형) 주계약 400구좌,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단위: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특약)			2종(표준형 특약)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151,640	0	0.0%	1,343,160	0	0.0%	1,107,960	0	0.0%	1,337,760	0	0.0%
3년	3,454,920	702,400	20.3%	4,029,480	1,796,640	44.5%	3,323,880	525,200	15.8%	4,013,280	1,908,630	47.5%
5년	5,758,200	1,525,600	26.4%	6,715,800	3,957,940	58.9%	5,539,800	1,149,200	20.7%	6,688,800	4,150,200	62.0%
10년	11,516,400	3,430,800	29.7%	13,431,600	9,159,740	68.1%	11,079,600	2,603,200	23.4%	13,377,600	9,593,010	71.7%
15년	17,274,600	5,248,800	30.3%	20,147,400	14,545,620	72.1%	16,619,400	4,014,800	24.1%	20,066,400	15,261,300	76.0%
20년	23,032,800	20,564,620	89.2%	26,863,200	20,564,620	76.5%	22,159,200	21,556,220	97.2%	26,755,200	21,556,220	80.5%
25년	23,032,800	22,679,010	98.4%	26,863,200	22,679,010	84.4%	22,159,200	23,712,860	107.0%	26,755,200	23,712,860	88.6%
30년	23,032,800	25,023,130	108.6%	26,863,200	25,023,130	93.1%	22,159,200	25,759,310	116.2%	26,755,200	25,759,310	96.2%
40년	23,032,800	29,541,280	128.2%	26,863,200	29,541,280	109.9%	22,159,200	26,228,430	118.3%	26,755,200	26,228,430	98.0%
50년	23,032,800	0	0.0%	26,863,200	0	0.0%	22,159,200	0	0.0%	26,755,200	0	0.0%

- 상기특약은 무배당 유엔아이 평생설계보험, 무배당 실속하나로건강보험II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인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특약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특약이 해지될 경우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2종(표준형)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 동안 특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됩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2종(표준형)의 비교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특약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특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종(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므로 전체 보험기간동안 특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하는 특약의 해지환급금이 없습니다.

기준 | 무배당 안심 치매진단특약 1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00구좌, 무배당 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40구좌 [90세 만기, 20년납, 40세, 월납]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연령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11,050	14,870	10,890	14,600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20,400	26,900	29,400	39,000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17,720	23,360	18,440	24,280
합계 보험료		49,170	65,130	58,730	77,880

2.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경과기간	남자				여자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1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2종(표준형)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1년	0	0.0%	0	0.0%	0	0.0%	0	0.0%
3년	0	0.0%	1,094,240	46.6%	0	0.0%	1,383,430	49.3%
5년	0	0.0%	2,432,340	62.2%	0	0.0%	3,001,000	64.2%
10년	0	0.0%	5,728,940	73.3%	0	0.0%	6,989,810	74.7%
15년	0	0.0%	9,296,820	79.3%	0	0.0%	11,246,500	80.2%
20년	13,481,420	114.2%	13,481,420	86.2%	16,079,020	114.0%	16,079,020	86.0%
25년	15,605,410	132.2%	15,605,410	99.8%	18,114,860	128.5%	18,114,860	96.9%
30년	18,137,130	153.6%	18,137,130	116.0%	20,210,510	143.3%	20,210,510	108.1%
40년	24,826,080	210.3%	24,826,080	158.8%	22,483,230	159.5%	22,483,230	120.2%
50년	0	0.0%	0	0.0%	0	0.0%	0	0.0%

-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경우 경과기간별 계약해당일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이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발생한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치매 정의 및 진단확정

※ (무)안심 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진단특약, (무)안심 중증치매 간병생활자금특약

1. 치매 정의

구분	보장내용
"경도치매상태"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1점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등도치매상태"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도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등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2점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치매상태"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 (단,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보장제외: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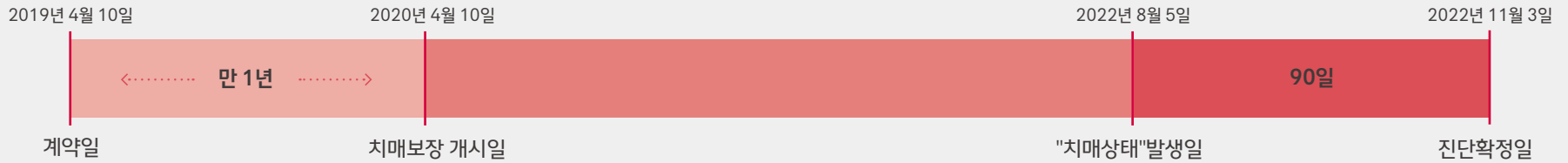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 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2. 치매 진단확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파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보장개시 및 진단확정 [예시]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CDR척도 기준 (임상치매평가척도)

구분	CDR 1점	CDR 2점	CDR 3점	CDR 4점	CDR 5점
 기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도의 기억장애 • 최근 것에 대한 기억장애가 더 심함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기억장애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함 •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기억장애 • 과거에 반복적으로 많이 학습한 것만 기억함 •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적인 사실조차도 보통 잊어버림 • 난해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검사하기 힘든 경우가 잦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기억 기능이 전혀 없음 •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지남력 <small>(시간, 장소, 사람과 관련된 감각)</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에 대한 중증도의 장애 • 사람과 장소에 대해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에 대한 지남력은 상실되고 장소에 대한 지남력 역시 자주 손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유지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만 때때로 반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대한 중증도의 장애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대부분 유지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능력, 유사성, 상이성 해석에 심한 장애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이 대부분 손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단이나 문제해결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지시나 명령도 수행할 능력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생활, 물건사기, 자원봉사, 사회적 활동의 일부에 참여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정상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잘 할 수 있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외견 상으로도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집안생활과 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생활에 가볍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임. 복잡한 취미나 흥미(바둑 등)는 포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 간단한 집안 일만 할 수 있고, 관심이나 흥미가 매우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에서 의미 있는 기능 수행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취미 활동이나 집안일에도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위생 및 몸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개인위생에 대한 권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입기, 개인위생, 개인 소지품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생과 몸치장의 유지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자주 대소변의 실금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입기나 식사를 하려는 시도는 있음 • 도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 시 먹여주어야 함 • 누워 지내는 상태임

[출처] 대한신경학회지, 2001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1.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 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6.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75%입니다.

7.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8.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보급금이나 사고보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센터 서비스 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12.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13.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AIA생명 고객센터 1588-9898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이동전화 : 지역번호-1332)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안내 부산 (051) 606-1701, 대구 (053) 760-4000, 광주 (062) 606-1600, 대전 (042) 479-5151~4 / 금융감독원 보험법죄신고센터 안내전화 : 1588-3311,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인터넷보험법죄신고 / 생명보험협회 본부 02) 2262-6600, 수도권지역본부 02) 2262-6552, 6572, 6573, 중부지역본부 042) 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 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 638-7801~4, 대구지부 053) 427-8051, 421-1621, 427-2276, 원주지부 033) 761-9672~3

AIA생명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길 16 AIA TOWER | 고객센터 1588-9898 / MKT-B270-2019-1 / COM-2019-05-30142 | 제작일자 : 2019.06